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[박영동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1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4.

발의의원 : 박영동 의원,
김보경 의원, 전홍배 의원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

3. 폐지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,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, 부과, 환급 또는 사용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(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을 포함한다)은 일반회계로 귀속된다.

참고**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**☐ **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**
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[시행 2008. 3. 28.] [법률 제9051호, 2008. 3. 28., 폐지]

